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09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박세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재용

피 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김지연, 김세호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경선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F과
가. 피고 C 사이에 2020. 7. 20. 체결된 1,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나. 피고 D 사이에 2020.
7. 20. 체결된 1,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다. 피고 E 사이에 2020. 7. 20. 체결된
1,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10462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2. 28.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F은 2015. 8. 6. 원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8. 5., 이자 매월
2,200,000원, 이자 지급시기 매월 5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전날인 같은 달 5. 원고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1. 6. 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로서 1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느단1011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21. 7. 16.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2호증의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상속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청구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그 차용금채무의 일부로서 원고 A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증여계약 취소 청구

또 망인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0. 7. 20.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최소한 각 1,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자녀들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각 2020. 7. 20.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 A에게 각 500,000원, 원고 B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속에 따른 대여금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망인의 대여금채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느단1011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21. 7. 16.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증여계약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2020. 7. 20.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

1) 원고들은 2022. 5. 2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하여 증여계약 취소 청구를 취하하고 대여금채무의 상속채무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위 신청서상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청구취지는 없고 금전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신청서상 변경된 청구원인에는 피고들의 상속포기를 이유로 향후 피고표시정정절차와 사해행위 부분의 청구를 확정하겠다고 기재하는 등 신청서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들 대리인은 2022. 7. 5.자 6회 변론기일에서 2022. 5. 2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취지는 기존의 청구취지 중 증여계약 취소 청구를 취하하고 대여금채무의 상속채무만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들 대리인은 2022. 5. 24.자 5회 변론기일에서 2022. 5. 2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진술 중 소의 취하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